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료면제 동의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11년 4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제안사유

○ 성주참외 경쟁력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건립한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,

○ 운영법인인 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의 시설 사용료를 감면하여 사업안정화 도모와 운영에 활력을 줌으로써 지속적인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과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하고자 함.

2. 제안근거
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5항
○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조례 제13조 제1항

3. 주요골자
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2과 동법시행령 제17조 제5항,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유통센터 등의 운영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
○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성주군 산지유통센터 시설 사용료를 2년간(2011. 4. 1~2013. 3.31)면제하여 운영법인인 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의 운영 안정화에 활력을 주고자 함.

4. 성주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일반 현황

○ 사용료 감면대상 시설물
- 위　　치 : 성주군 대가면 옥성리 356번지 외6필지
- 부　　지 : 27,704㎡ (8,380평)
- 건 축 물 : 5동 8,141㎡ (2,463평)
- 기계장비 : 비파괴당도선별기 외 30종

○ 사용허가 내역

- 사 용 자 : 성주조합공동사업법인
- 허가기간 : 2010. 4.1~2013. 3.31 (3년간)

○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료면제 동의

- 제144회 성주군의회(임시회)제6차 본회의(2008. 2.19)
 ☞ 2년간 사용료 면제 (기간 : 2007. 4. 1~2009. 3. 31)
- 제154회 성주군의회(임시회) (2009.3.31)
 ☞ 2년간 사용료 면제 (기간 : 2009. 4. 1~2011. 3. 31)

○ 운영실적 (단위 : 백만원)

년도	사업별	계 획	실 적	손익금
계		38,800	42,600	▽898
2007	직판사업	7,800	9,200	
	공판사업	31,000	33,400	
계		42,500	48,824	121
2008	직판사업	7,500	7,904	
	공판사업	35,000	40,920	
계		51,200	54,118	260
2009	직판사업	8,200	8,075	
	공판사업	43,000	46,043	
계		55,000	58,092	262
2010	직판사업	8,000	8,887	
	공판사업	47,000	49,205	
증 감				▽255

○ 2011년 사업계획

- 내실 있는 경영체제 확립 및 농업인 실익 증대
- 연중 가동율 제고 : 취급품목 확대 (사과, 배, 복숭아, 포도 등)
- 판매(매출)계획 : 560억원 (직판80 공판480)

5.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
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5항

○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조례 제13조 제1항

○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2011. 4. 8 가결

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용료면제 동의안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17조 제5항,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의 운영 및 관리조례 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성주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 사용허가에 대하여

⇒ **2년간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함.**

☞ **면제기간 : 2011. 4. 1 ~ 2013. 3. 31**